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비전문취업(E-9)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정주화 방지 및 단기 순환(교체)을 위해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,

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·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항이 신설(시행 : 2021. 4. 13.)됨에 따라,

비전문취업(E-9)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의 하한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상향하는 한편,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사업실적서를 지방출입국·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실적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합 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, 제3호의 기간을 6년 이상으로 한다.

제77조의4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는 출장소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,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

1. (생략)
2. 사업실적서(기록물 전자화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에 한정한다)
3. (생략)
4. (생략)
- ③ (생략)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